

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8년 10월 6일
-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3. 제안이유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
-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외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
- 버스,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·장비의 확충 사업 반영
-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,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「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」로 제명 변경
-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지원 기준(1일 운행횟수가 왕복 5회 이하)인 운행횟수 제한 폐지(안 제2조)
-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적용범위를 확대(안 제4조)
 - 시내·농어촌버스 → 마을·시외버스, 일반·개인택시운송사업자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외버스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
- 농촌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고유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